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1298
----------	------

제출연월일: 2019. 2.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임기 만료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자격 있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와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현황

- 1) 위촉인원: 7명 (남 4명, 여 3명)
-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 불가
- 3) 주요기능

- 구청 및 구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나. 위촉 시 고려사항

- 1)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법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함

- 자 격: (부)교수·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2)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구정참여)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균형을 맞추고자 함

다. 위촉 대상자 현황(연령순)

연번	①	성명	남 윤 봉	성별	남	생년월일	48.10.03.
			직업	한양대 명예교수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②	성명	박 기 준	성별	남	생년월일	54.04.10.
			직업	퇴직 공무원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서기관 (4급) 퇴직</li> <li>◦ 전) 성동구 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장</li> </ul>			

연번	③	성명	지 세 진	성별	남	생년월일	57.04.13.
			직업	KC산업개발 부사장 (건설안전기술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KC산업개발 부사장 (건설안전기술사)</li> <li>◦ 전) 성동구 치수과장, 서울시 도로관리과</li> </ul>			

연번	④	성명	박 춘 성	성별	여	생년월일	70.10.05.
	직업	아르스건축사무소 (건축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스건축사무소 대표</li> <li>◦ 성동구, 용산구 건축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⑤	성명	이 금 규	성별	남	생년월일	73.04.19.
	직업	법무법인도시 (변호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li> <li>◦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li> <li>◦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⑥	성명	조 지 영	성별	여	생년월일	76.07.04.
	직업	법무법인 서광 (변호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6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법무법인 서광 소속 변호사</li> <li>◦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⑦	성명	신 진 희	성별	여	생년월일	79.10.27.
	직업	시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우리은행 PB사업단 근무</li> <li>◦ 시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li> <li>◦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li> </ul>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2. 21.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2. 8.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9. 2. 11.
- 다. 상정일자: 2019. 2. 20.

(제24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임기 만료로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자격 있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현황

- 1) 위촉인원: 7명 (남 4명, 여 3명)
-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 불가
- 3) 주요기능
  - 구청 및 구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나. 위촉 시 고려사항

- 1)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법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함
  - 자격: (부)교수·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
- 2)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구정참여)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균형을 맞추고자 함

#### 다. 위촉 대상자 현황(연령순)

연번	①	성명	남 윤 봉	성별	남	생년월일	48.10.03.
	직업	한양대 명예교수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li>◦ 성동구 인권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②	성명	박 기 준	성별	남	생년월일	54.04.10.
	직업	퇴직 공무원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서기관 (4급) 퇴직</li> <li>◦ 전) 성동구 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장</li> </ul>					

연번	③	성명	지 세 진	성별	남	생년월일	57.04.13.
	직업	KC산업개발 부사장 (건설안전기술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KC산업개발 부사장 (건설안전기술사)</li> <li>◦ 전) 성동구 치수과장, 서울시 도로관리과</li> </ul>					

연번	④	성명	박 춘 성	성별	여	생년월일	70.10.05.
	직업	아르스건축사무소 (건축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르스건축사무소 대표</li> <li>◦ 성동구, 용산구 건축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⑤	성명	이 금 규	성별	남	생년월일	73.04.19.
	직업	법무법인도시 (변호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li> <li>◦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li> <li>◦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⑥	성명	조 지 영	성별	여	생년월일	76.07.04.
	직업	법무법인 서광 (변호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6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법무법인 서광 소속 변호사</li> <li>◦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li> </ul>					

연번	⑦	성명	신 진 희	성별	여	생년월일	79.10.27.
	직업	시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우리은행 PB사업단 근무</li> <li>◦ 시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li> <li>◦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li> </ul>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201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구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7명을 신규 위촉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위촉 대상자들의 주요 경력과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본 바, 변호사·건축사·세무사·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로 고충 민원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